

# 서울특별시 어린이놀이기구 안전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의안 번호	관련 1999
----------	------------

제안일자 : 2024년 8월 30일

제안자 : 도시안전건설위원장

## 1. 수정이유

- 안 제8조제2항과 관련하여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상 관리감독기관의 장인 자치구청장에게 이미 제한행위를 한 자에 대해 과태료 부과 등 보다 강력한 조치권한을 부여하고 있는바,
- 현장에서의 혼란을 예방하기 위해 시장의 조치권한을 별도로 규정하기보다는 법이 정한대로 관리감독기관의 장의 조치권한으로 일임하는 것이 법적 타당성과 현실성에 부합한다고 판단되므로 안 제8조제2항을 삭제할 필요가 있음.

## 2. 주요골자

- 가. 어린이놀이기구에서 제한행위를 한 사람에 대한 시장의 조치에 관한 사항을 삭제함(안 제8조제2항).

# 서울특별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서울특별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8조(어린이놀이시설에서의 행위제한) 영 제11조의3제7호에서 “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행위”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.

1. 어린이 놀이 활동 목적 이외의 물건을 던지거나 타격하여 시설 물이나 이용자에게 위험이 되는 행위
2. 시설 이용자나 관리자 등에게 성적(性的)수치심을 일으켜 위험을 주는 행위

## 수정안 조문 대비표

현	행	개 정 안	수 정 안
	<u>&lt;신 설&gt;</u>	<p>제8조(어린이놀이시설에 서의 행위제한) ① 영 제11조의3제7호에서 “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로 정하는 행위”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.</p> <p>1. 어린이 놀이 활동 목적 이외의 물건을 던지거나 타격하여 시설물이나 이 용자에게 위험이 되는 행위</p> <p>2. 시설 이용자나 관리자 등에게 성적(性的)수치 심을 일으켜 피해를 주 는 행위</p> <p>② 시장은 어린이놀이시 설에서 제한된 행위를 하여 시설물이나 이용자 에게 위해·위험을 가한 사람에게는 해당 행위를 경고하고 즉시 안전조치 를 할 수 있다.</p>	<p>제8조(어린이놀이시설에 서의 행위제한) 영 제11 조의3제7호에서 “지방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 는 행위”란 다음 각 호 의 행위를 말한다.</p> <p>1. 어린이 놀이 활동 목적 이외의 물건을 던지거나 타격하여 시설물이나 이 용자에게 위험이 되는 행위</p> <p>2. 시설 이용자나 관리자 등에게 성적(性的)수치 심을 일으켜 피해를 주 는 행위</p>

## 서울특별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조부터 제10조까지를 각각 제9조부터 제11조까지로 하고, 제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8조(어린이놀이시설에서의 행위제한) 영 제11조의3제7호에서 “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행위”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.

1. 어린이 놀이 활동 목적 이외의 물건을 던지거나 타격하여 시설물이나 이용자에게 위험이 되는 행위
2. 시설 이용자나 관리자 등에게 성적(性的)수치심을 일으켜 위해를 주는 행위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 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 data-bbox="619 365 790 405">&lt;신 설&gt;</p> <p data-bbox="172 1099 614 1142"><u>제8조 ~ 제10조</u> (생 략)</p>	<p data-bbox="818 365 1436 607"><u>제8조(어린이놀이시설에서의 행위제한) 영 제11조의3제7호에서 “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행위”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.</u>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 data-bbox="853 633 1436 875">1. <u>어린이 놀이 활동 목적 이외의 물건을 던지거나 타격하여 시설물이나 이용자에게 위협이 되는 행위</u></li> <li data-bbox="853 902 1436 1077">2. <u>시설 이용자나 관리자 등에게 성적(性的)수치심을 일으켜 위해를 주는 행위</u></li> </ol> <p data-bbox="818 1104 1436 1211"><u>제9조 ~ 제11조</u> (현행 제8조부터 제10조까지와 같음)</p>